

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(안)

# 옥천군장애인복지관

[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장애인활동지원사업]



옥천군노인·장애인복지관

# [ [예산총칙] ]

제 1조 2024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4,219,098천원으로 한다.

합 계		4,219,098		
장애인 복지관	복지관	2,886,608		
	주간보호	282,133		
	장애인활동지원	1,050,357		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「세입·세출예산서」와 같다.

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
- 1) 관간의 전용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2) 향간의 전용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3)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의 받아야 한다.

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.

## 2024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

\* 옥천군장애인복지관

(단위 : 천원)

세 입									세 출										
기관별	계	보조금수입		후원금수입		자체부담금		계	사무비		재산조성비		사업비		잡지출		예비비및기타		
		금액	%	금액	%	금액	%		금액	%	금액	%	금액	%	금액	%	금액	%	
<b>총 계</b>	<b>4,219,098</b>	<b>2,865,404</b>	<b>67.9</b>	<b>48,010</b>	<b>1.1</b>	<b>1,305,684</b>	<b>30.9</b>	<b>4,219,098</b>	<b>2,806,317</b>	<b>66.5</b>	<b>57,000</b>	<b>1.4</b>	<b>1,255,424</b>	<b>29.8</b>	<b>2,966</b>	<b>0.1</b>	<b>97,391</b>	<b>2.3</b>	
장애인복지관	복지관	2,886,608	2,636,414	91.3	48,010	1.7	202,184	7.0	2,886,608	1,649,203	57.1	18,100	0.6	1,146,384	39.7	2,609	0.1	70,312	2.4
	주간보호	282,133	228,990	81.2	0	0.0	53,143	18.8	282,133	220,590	78.2	8,200	2.9	26,040	9.2	224	0.1	27,079	9.6
	활동지원사업	1,050,357	0	0.0	0	0.0	1,050,357	100.0	1,050,357	936,524	89.2	30,700	2.9	83,000	7.9	133	0.0	0	0.0

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(안)

# 장애인복지관



옥천군노인·장애인복지관

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(안)

# 장애인복지관

세입 예산액 2,886,608천원

세출 예산액 2,886,608천원

세입. 세출 차인잔액 없음



옥천군노인·장애인복지관

## 2024년도 옥천군장애인복지관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

(단위 : 천원)

세 입					세 출				
관 항 목	기정예산 (A)	추경예산 (B)	증 감(B-A)		관 항 목	기정예산 (A)	추경예산 (B)	증 감(B-A)	
			금액	비율(%)				금액	비율(%)
합 계	2,816,263	2,886,608	70,345	2.5	합 계	2,816,263	2,886,608	70,345	2.5
01 사업수입	55,000	55,000	0	0.0	01 사무비	1,651,550	1,649,203	△2,347	△0.1
02 보조금수입	2,635,103	2,636,414	1,311	0.0	02 재산조성비	13,000	18,100	5,100	39.2
03 후원금수입	47,560	48,010	450	0.9	03 사업비	1,127,713	1,146,384	18,671	1.7
04 전입금	5,000	5,000	0	0.0	04 잡지출	2,000	2,609	609	30.5
05 이월금	71,600	140,184	68,584	95.8	05 예비비및기타	22,000	70,312	48,312	219.6
06 잡수입	2,000	2,000	0	0.0					

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 세출 예산(안)

# 장애인주간보호시설



옥천군노인·장애인복지관

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 세출 예산(안)

# 장애인주간보호시설

세입 예산액 282,133천원

세출 예산액 282,133천원

세입. 세출 차인잔액 없음



옥천군노인·장애인복지관



# [ [예산총칙] ]

제 1조 2024년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282,133천원으로 한다.

(단위 : 천원)

세입	계	282,133	세출	계	282,133
	사업수입	14,400		사무비	220,590
	보조금수입	228,990		재산조성비	8,200
	이월금	38,703		사업비	26,040
	잡수입	40		잡지출	224
				예비비및기타	27,079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「세입·세출예산서」와 같다.

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
- 1) 관간의 전용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2) 향간의 전용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3)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.

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.

## 2024년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

(단위 : 천원)

세 입					세 출				
관 항 목	기정예산 (A)	추경예산 (B)	증 감(B-A)		관 항 목	기정예산 (A)	추경예산 (B)	증 감(B-A)	
			금액	비율(%)				금액	비율(%)
합 계	278,670	282,133	3,463	1.2	합 계	278,670	282,133	3,463	1.2
01 사업수입	14,400	14,400	0	0.0	01 사무비	220,590	220,590	0	0.0
02 보조금수입	228,990	228,990	0	0.0	02 재산조성비	6,000	8,200	2,200	36.7
03 이 월 금	35,240	38,703	3,463	9.8	03 사업비	26,040	26,040	0	0.0
04 잡 수 입	40	40	0	0.0	04 잡지출	40	224	184	460.0
					05 예비비및기타	26,000	27,079	1,079	4.2

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 세출 예산(안)

# 장애인활동지원사업

 옥천군노인·장애인복지관

2024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. 세출 예산(안)

# 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세입 예산액 1,050,357천원

세출 예산액 1,050,357천원

세입. 세출 차인잔액 없음



옥천군노인·장애인복지관

# [ [예산총칙] ]

제 1조 2024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차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 총액은 1,050,357천원으로 한다.

(단위 : 천원)

세입	계	1,050,357	세출	계	1,050,357
	사업수입	928,424		사무비	936,524
	이월금	121,833		재산조성비	30,700
	잡수입	100		사업비	83,000
				잡지출	133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「세입·세출예산서」와 같다.

제 3조 복지관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 상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.

- 1) 관간의 전용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2) 향간의 전용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3) 목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지방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찬조보조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비비의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금액을 명시하여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의 받아야 한다.

제 6조 복지관의 예산의 의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.

## 2024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차 추가경정 세입.세출 예산

(단위 : 천원)

세 입					세 출				
관 항 목	기정예산 (A)	추경예산 (B)	증 감(B-A)		관 항 목	기정예산 (A)	추경예산 (B)	증 감(B-A)	
			금액	비율(%)				금액	비율(%)
합 계	1,028,524	1,050,357	21,833	2.1	합 계	1,028,524	1,050,357	21,833	2.1
01 사업수입	928,424	928,424	0	0.0	01 사무비	939,924	936,524	△3,400	△0.4
02 이 월 금	100,000	121,833	21,833	21.8	02 재산조성비	2,000	30,700	28,700	1,435.0
03 잡 수 입	100	100	0	0.0	03 사업비	86,500	83,000	△3,500	△4.0
					04 잡지출	100	133	33	33.0